

202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ONTENTS

202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I] 사업개요

[II] 사업내용

[III] 신청방법

[IV] 간접지원사업

[V] 유의사항

I 사업개요

①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지원

②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③ 제외대상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민사집행법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동 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에서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을 통해 동일한 제품,(파생)모델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던 기업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및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지원

II

사업내용

① 지원규모

- 약 연간 1,100개사 내외 지원 (1차 약 55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② 지원내용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44개인증)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공고된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분야	지원 인증건수(3)	기업당(1) 지원한도(천원)	지원비율(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4)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출액 30억 초과	
해외규격인증 (그 외 국가)	최대 4건	연간 100,000	70%	50%	운영지침 [별표 제4호 참조]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 규격인증	최대 15건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연간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4)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①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 규격인증

- 신규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은 최대 15건 지원
 예) NMPA 화장품 인증-립스틱(A)/립스틱(B)/립스틱(C)등 인증서 발행 건수별로 신청시 1건으로 간주

신남방국가 (11개)

- 브루나이
- 필리핀
- 캄보디아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태국
- 라오스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
- 미얀마

신북방국가 (13개)

- 러시아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아르메니아
- 우즈베키스탄
- 몰도바
- 투르크메니스탄
- 몽골
- 키르기스스탄

동시 신청 방법 예시

인증	신청건수	총 신청건수
해외규격인증(그 외 국가)	3건	4건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 규격인증	1건 (최대 15건을 신청해도 1건으로 간주)	

2 신청방법 예시

• 잘못 신청한 사례

◆ 신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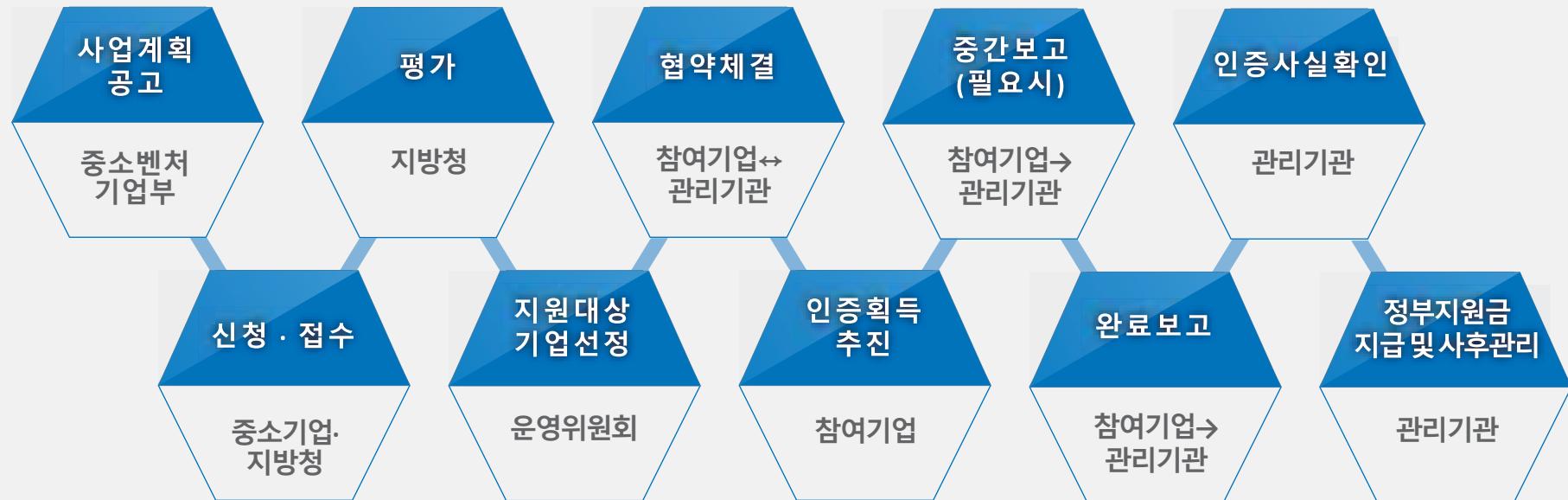
신청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예상 소요비용**	예상 협약금액***
신청 1	중국·신남방·북방	중국	NMPA	기초화장품 8종	DoC-NPCS1-H	화장품 (330499)	40,000 천원	32,900 천원
계							40,000 천원	32,900 천원

• 올바르게 신청한 사례

◆ 신청내용

신청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예상 소요비용**	예상 협약금액***
신청 1	중국·신남방·북방	중국	NMPA	아고네쁘리 NM F 크림	DoC-NPCS1	화장품 (330300)	3,850 천원	3,600 천원
신청 2	중국·신남방·북방	중국	NMPA	아고네쁘리 스키 토너	DoC-NPCS1	화장품 (330300)	3,850 천원	3,600 천원
신청 3	중국·신남방·북방	중국	NMPA	아고네쁘리 폼클 렌저	DoC-NPCS1	화장품 (330300)	3,850 천원	3,600 천원
신청 4	중국·신남방·북방	중국	NMPA	아고네쁘리 안티 트러블펜	DoC-NPCS1	화장품 (330300)	3,850 천원	3,600 천원
계							15,400 천원	14,400 천원

① 추진절차



② 추진일정

사업명	구분	1차	2차	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공고일	2.1.	5.3.	8.2.
	신청·접수	2.1.~2.26.	5.3.~5.28.	8.2.~8.31.
	평가·선정	3.2.~4.13.	6.1.~7.13.	9.1.~10.12.
	협약체결	4.14.~4.23.	7.14.~7.23.	10.13.~10.22.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1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운영지침 별표 제3호 참조]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 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 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2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운영지침 별표 제2호 참조]에 해당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③ 기타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경우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협약금액)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 기관으로 신고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운영지침 별표 제4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 결정
 -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1 주요변경사항

2020년 사업

본예산 : 106.5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기업 추가선정(15억원 긴급지원)

'18년 사업 참여 후 인증획득한 기업 중
동일인증, 동일제품(HSCODE) 신청 불가

'18년 이전 기 획득한 인증에 대해
인증갱신비용 지원

가점항목 : 6개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추가선정)

예산규모

운영방식 / 지원비율

중복지원

인증갱신

우대사항

2021년 사업

본예산 : 153.0억원
(약 46.5억원 증액)

- K-방역/바이오 관련 품목 기업 추가지원(50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매출규모 상관없이 70% 지원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 이상 하락기업)

동 사업 참여 후 인증획득한 기업 중
동일인증, 동일제품(모델), 신청품목 신청 불가

인증만료일이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도래한
인증에 대해 인증갱신비용 지원

가점항목 : 11개
(지방소재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스마트공장구축기업, 해외인증적합 제품 기업)

1 신청방법 절차

온라인신청서작성

- 1 수출지원센터접속
- 2 회원가입후로그인
- 3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기업정보입력

1. 업체기본정보
2. 대표자 정보
3. 과제 책임자 정보
4. 직전 연도 매출액

신청인증내용입력

1. 인증 명칭
2. 품목분야
3. 수출예정국가
4. 신청품목 등

구비 서류업로드

1. 필수제출서류
2. 평가항목별제출서류

2 필수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직전 연도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전산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업로드 필수)

※ 평가항목별 제출 서류 : [운영지침별첨 제1-3호] 참조

해외인증기술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가점 1~3점 부여)

일반교육

- 해외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인지 및 숙지 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 지원(1일 과정) – 가점 1점

심화교육

-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준비사항부터 기술문서작성, 실습 등 심화교육 지원(2~3일과정) – 가점 3점

국제세미나

-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현지 시험·인증기관 담당자를 초청, 현장 피드백 및 애로사항 해소 (가점 1점)



신청방법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STEP 2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STEP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STEP 4

교육 신청

해외규격인증 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해외규격인증 교육 수료증은 온라인신청자, 현장 신청자 관계없이 모두 온라인 발급

온라인 신청자 수료증 발급 방법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STEP 2 로그인 → STEP 3 수출지원사업 →

STEP 4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 STEP 5 교육신청 →

STEP 6 교육신청조회 → STEP 7 해당 교육명 클릭 →

STEP 8 우측 하단 수료증 인쇄 버튼

현장 신청자 수료증 발급 방법

- 현장 당일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참가자 성명, 직책, 생년월일** 필수로 작성후 제출시 전산 반영
(기존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
(1-2일 소요, 교육일자로부터 2일 이후에 확인요망)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

STEP 2 로그인 → STEP 3 수출지원사업 →

STEP 4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 STEP 5 교육신청 →

STEP 6 교육신청조회 (오프라인) →

STEP 7 우측 하단 수료증 인쇄 버튼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 » 해외인증 획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 전문인력을 매칭하여 인증진행 컨설팅 및 제품개선 등 애로기술지원
- » 사업기간 : '21년 3월 ~ 12월 (단,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1단계 - 현장애로지원

- 인증 전문인력을 기업 현장으로 파견하여 온/오프라인 1:1 기술지원 (기업당 최대 5회)

2단계 - 시험비용지원

- 제품 개선 등 애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Debugging) 비용 70% 지원
- 기업한도 : DOC인증 250만원 / COC인증 500만원

지원절차

STEP 1

기술애로 접수 및 발굴

상시 애로접수 /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발굴

STEP 2

현장애로지원

인증 전문인력 1:1 맞춤형 기술지도(온/오프라인 병행)

STEP 3

시험비용지원

신청한 제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험비 70% 지원

신청방법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STEP 2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STEP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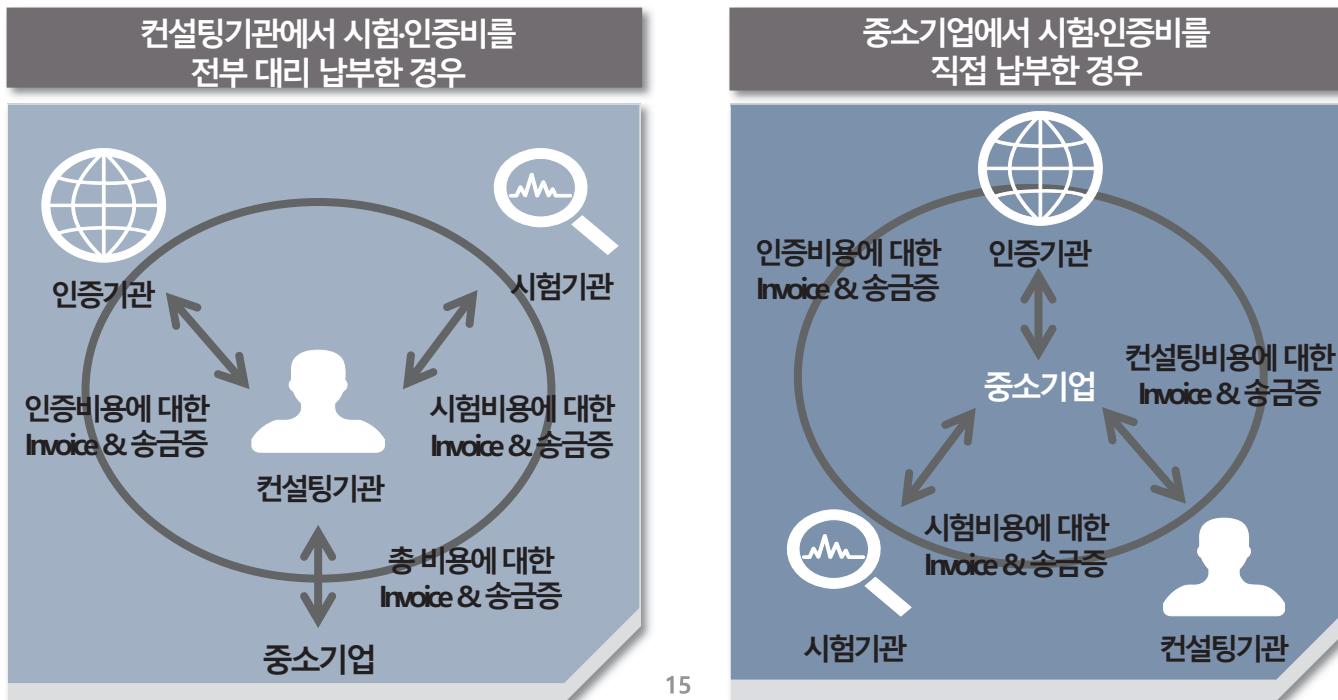
맞춤형기술지원 신청 및 현황

① 신청시 – 견적서 항목

- 평가항목 중 견적서 제출 부분은 필수 사항은 아님 (단,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
 - 컨설팅기관에서 시험비·인증비를 포함하여 발행한 견적서 평가 점수 인정 불가
- (단, 시험·인증기관에서 컨설팅기관으로 발행한 견적서와 컨설팅기관에서 중소기업에게 발행한 견적서 포함이면 인정)

② 완료보고서 – 증빙서류 제출시

- 인증 획득에 소요된 비용 확인을 위해 각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Invoice)와 송금증 제출
(단,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현지 대행 위탁 시 송금내역 확인 불가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 요망)



감사합니다

202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사업단
문의처 : 02-2164-0173~0178